

	법률동향	2026. 1. 29.(목) 법무과장 윤재순(☎32030) 법무행정팀장 최윤미(☎33724) 주무관 김덕영(☎33235)
---	---------------	---

2월 주요 시행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0호, 2025. 1. 3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가 공사를 수급·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2호, 2025. 1. 3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광고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정하여 해당 광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한 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강검진기본법 -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97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관리가 필요한바,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72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바,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채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을 미이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임시조치인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약사법 -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함. 아울러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유아교육법 -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절차 및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원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장대응업무’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여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장대응업무의 범위와 심리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인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하여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조사·자원봉사·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제15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2. 12.]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외에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등록 등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항은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인중개사법 -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일부개정]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고,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고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09호, 2025. 8. 14.,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고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그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로 확대하며, 기존 시설 또한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 -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는데 입시와 관련된 부정·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게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특례를 둌으로써 입시 부정행위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21호, 2025. 8. 14.,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정의함(제2조제4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제14조의2 신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18호, 2025. 8. 14.,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광고주 등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09호, 2025. 8. 14.,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자율방범연합회와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가 신청주의로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시·도별로 시·도자율방법연합회 1개 조직 및 시·군·구별로 시·군·구자율방법연합회 1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에 2개 이상의 시·도경찰청이 있거나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2. 24.] [법률 제21239호, 2025. 12. 23.,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인바,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 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제5조).
- 라.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주거·직무교육·경력개발 등의 지원과 지역의사로서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 건축법 -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하여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41호, 2025. 8. 2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41호, 2025. 8. 2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예산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 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목적 조문의 최종 목적으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종전의 최종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중간 목적으로 규정함(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제15조제1항).
-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신설).
-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5조의2).

○ 국회 접수 의안 확인(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

○ 중앙부처 입법예고 내용 확인(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